

제22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소 소관)

2020. 8.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10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8. 19.
- 라. 회부일자 : 2020. 8. 19.

2.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발생 및 장기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사시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다.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안 제7조)
- 라.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8조~10조)

- 마. 감염병관리기관 및 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6조)
- 바. 방역관, 역학조사관, 예방위원,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안 제21조~24조)
- 사. 교육 및 홍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25조~27조)
- 아. 정보제공 요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28조~2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의료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0. 7. . ~ 2020. 8. .(20일 이상)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5. 검토의견

- 가.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장기화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활동 필요하고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상황발생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문인력 확보, 역량강화를 위한 책임과 권한, 협력체계 구축 등 감염병 확산과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마련하고자 2020. 8. 19.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표1과 같으며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1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 구청장의 책무 ○ 제5조 :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 제6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 ○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감염병 표본감시 ○ 제9조 : 역학조사 ○ 제10조 : 필수예방접종 ○ 제11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12조 :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 제13조 :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 제14조 :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제15조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 :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 제17조 :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제18조 :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제19조 : 감염병의 예방 조치 ○ 제20조 : 소독 의무 ○ 제21조 : 방역관 ○ 제22조 : 역학조사관 ○ 제23조 : 예방위원 ○ 제24조 : 자원봉사 ○ 제25조 : 교육 및 홍보 ○ 제26조 :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 제27조 : 협력체계 구축 ○ 제28조 : 정보제공 요청 ○ 제29조 : 표창 등

다. 주요 사항 검토

1) 구청장과 의료인의 책무 등(안 제4조와 제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책무를 부여하고, 감염병 예방·진료에 관한 의료인·의료기관의 권리와 책무를 강화 하여 감염병 예방·치료에 적극적인 대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구민의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부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부담한 비용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감염병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무와 책무를 부여하고, 감염병 예방·진료에 관한 의료인·의료기관의 권리와 책무를 강화 하여 감염병 예방·치료에 적극적인 대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4) 감염병 표본감시 등 자료제공의 요청(안 제8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5) 역학조사(안 제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6)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및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 「감염병예방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특히, 제정안 제13조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부족한 감염병관리시설 확보를 위해 한시적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필요 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7)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등(안 제14조~제16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등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통해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임.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교육 및 홍보, 지역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구축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역학조사 등에 대한 내용 등 감염병 방역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에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근 신·변종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인하여 확진 환자가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 및 관리의 중요해졌고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음.

-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관련법령 1부.

【참고 1】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조례 제정 현황
- 8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중

구 분	제정 및 개정
서울시	20.7.16. 개정
강서구	20.7.15.제정
구로구	2019.10.11. 개정
도봉구	2020.4.9. 개정
마포구	2020.4.24. 제정
영등포구	2020.5.28. 개정

경기도, 강원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등

【참고 2】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및 조치사항 현황(7.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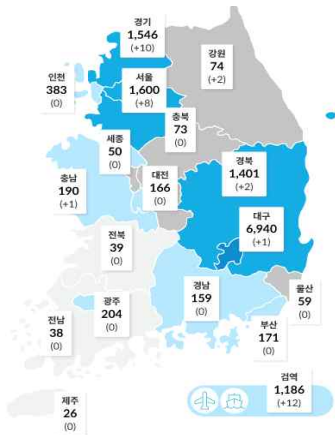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및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전파차단에 기여코자 함

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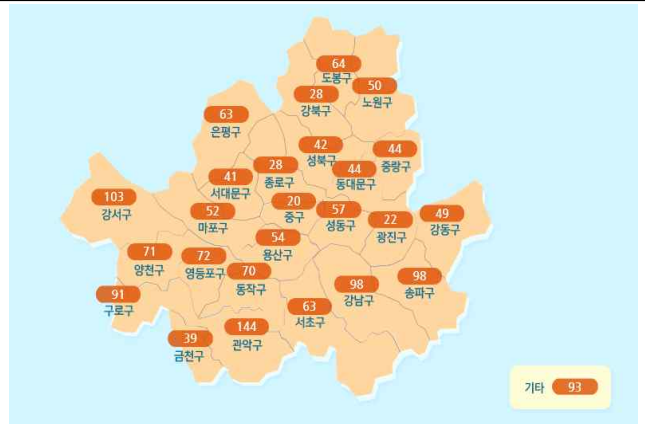
□ 국내 및 국외 발생현황

(7. 31. 1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단위:명)

구분	국외		국내		서울시		금천구	
	확진자	사망	확진자	사망	확진자	사망	확진자	사망
계	17,148,543	669,719	14,305	301	1,600	11	39	0



전국



서울시

□ 우리구 발생현황

(7. 31. 18시 기준. 단위: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금천구	39	-	1	11	-	3	17	7
타구(동선)	67	-	3	27	2	6	26	3
계	106	-	4	38	2	9	43	10

※ 기타 : 검역소 확진4, 재양성3

- 치료현황 : 치료 중 4명(완치 35명)

- 격리병원 : 서남병원 18건, 보라매 15건, 기타 6건

II 선별진료소 및 상담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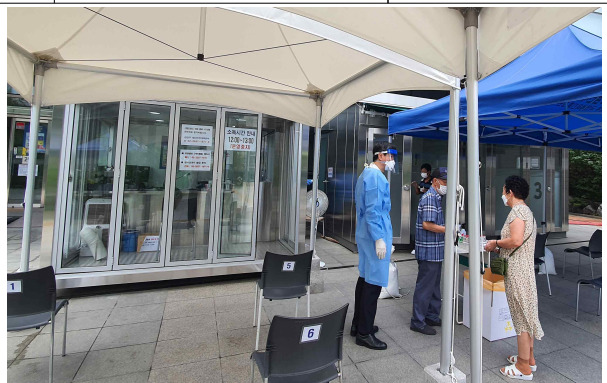
[선별진료소 운영 내역]

○ 선별진료소 설치 현황

연번	위치	운영시간	시설	비고
1	금천구보건소 (시흥1동)	평일 09:00~18:00 주말 19:00~16:00	이동식 검체부스 1동 대기부스 1동 이동식 엑스레이 1대	운영시간외 대책본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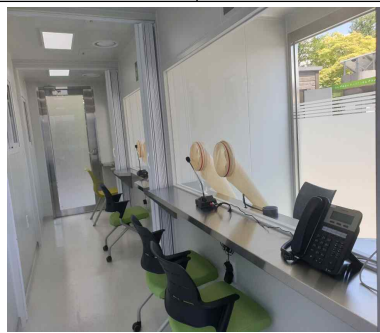
선별진료소 설치(2월)



선별진료소 구축(5월)



이동식 검체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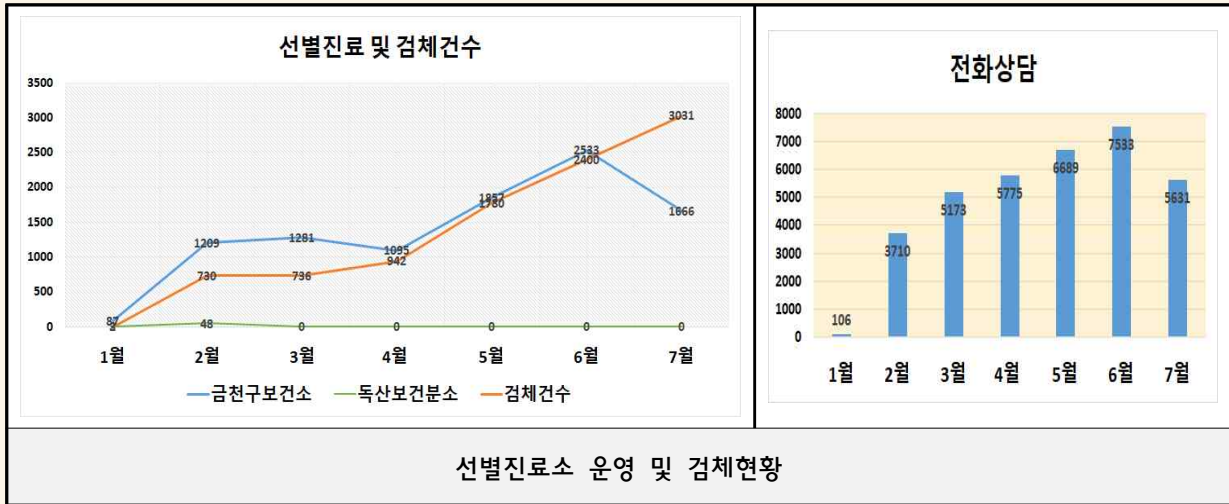
대기부스



○ 선별진료소 및 전화상담 실적

(7.31. 18:00 기준 단위 : 명)

구분	선별진료실 운영				전화상담
	소계	보건소	보건분소	검체	
계	9,779	9728	51	9,627	3,4617
7월	1,666	1,666	0	3,031	5,631
6월	2,533	2,533	0	2,400	7,533
5월	1,857	1,857	0	1,780	6,689
4월	1,095	1,095	0	942	5,775
3월	1,281	1,281	0	736	5,173
2월	1,257	1,209	48	730	3,710
1월	90	87	3	2	106



○ 노인복지시설 선제검사 내역

- 대상 : 관내 노인복지시설 40개소

- 검사방법 : 취합검사

- 검사내역

┌ 종사자(635명) : 7.1 ~ 7.2 /서울시 현장선별진료소 운영

└ 입소자(989명) : 6.29 ~ 7.16 금천구 이동검체반(2개조) 운영

※ 이동 검사반 구성 : 2개조 총 10명(각 조별 의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행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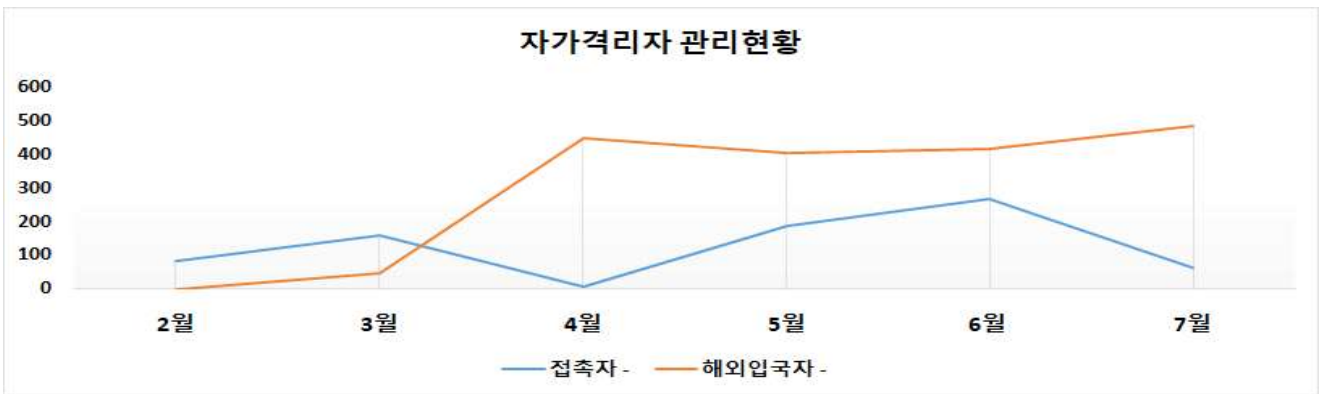
구분	검사대상	검사장소	검사완료	검사결과	검사율(%)
종사자	643	필승아파트	635	전원음성	98
입소자	989	각 해당시설	916	전원음성	92
계	1,632	-	1,551	-	-

Ⅲ 자가격리자 관리

○ 자가격리자 관리현황(신규 발생기준)

(7.31. 18:00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격리중	격리해제
접촉자	763	-	81	160	8	187	268	64	19	744
해외입국자	1,834	-	-	47	450	403	416	520	254	1,580
합계	2,597	-	81	207	458	590	684	584	273	2,324



○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 해외입국자 전수격리 : (유럽 3.22 > 미국 3.27> 전체확대 4.1)

- 자가격리 관리자수 : 1,834명

- 우리구 입국자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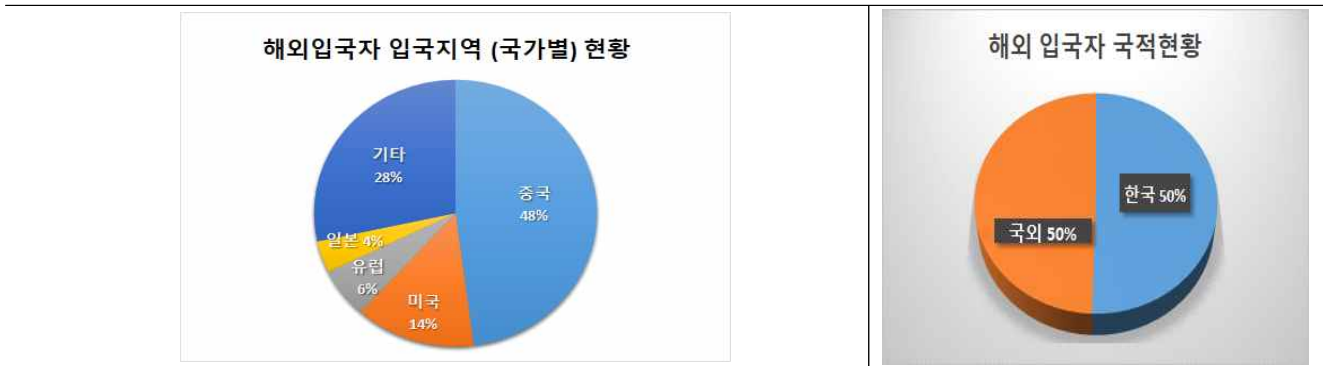
(7. 31. 00:00 기준 단위 : 명)

누계	3월	4월	5월	6월	7월
1,834	50	445	403	416	520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해외입국자	50	445	403	416	485

- 입국지역 및 국적

입국지역(국가)						국적	
누계	중국	미국	유럽	일본	기타	한국	국외
1,834	883	249	109	69	514	912	922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

- 대상 : 버스 정류장, 외국인 거주밀집지역, 복지시설, 경로당, 고시원, 시장 등
- 방역실적 : 총 12,336건 (단위 : 개소)

구분	계	가산동	시흥동	독산동	분무기 대여
보건소	7,965	1,398	3,098	3,469	602대

구분	계	부서	동주민센터
부서 및 동 주민센터	4,371	745	3,6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장비 및 방역물품 관리

- 방역장비 관리현황 (단위 : 대)

연 번	품 명	총 계	기 존유량	금 년구매량	비고	
총 계		810	40	770		
1	열감지카메라	19	3	16	11개 동 주민센터 비치	
2	음압텐트	5	2	3		
3	음압기	7	2	5		
4	방역소독기	초미립자 살포기	73	-	73	60대 동 주민센터 배부
5		동력분무기	1	1	-	차량 장착용
6		휴대용 분무기	250	20	230	
7	비접촉식 체온계	455	12	443	269개 부서 및 동 주민센터 배부	

○ 방역물품 관리현황

(단위 : 개)

구 분	총 계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소독 스프레이	체온계	자가격리자 물품키트
계	1,454,202	1,413,368	24,485	4,342	9,262	201	2,544
보건소	188,815	156,187	21,145	771	8,158	10	2,544
부 서	1,265,387	1,257,181	3,340	3,571	1,104	191	-

작성자	건강증진과장:최윤경(2640) 감염병관리팀장:권광남(2716), 담당:강혜란(2717)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방역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창고 설치
- 5,000,000원×2개 = 10,000,000원
- 비축물품 구매(연간) : 70,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팀 강혜란
연 락 처	2627 - 27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1.] [법률 제16725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 12.(생략)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 20.(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칠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 3의2.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2018. 3. 27., 2020. 3. 4.>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8. 3. 27., 2020.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2020. 3. 4.>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2018. 3. 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시행일 : 2020. 9. 5.] 제11조

제14조(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6.>

④ 제1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제16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표본감시를 위하여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9. 12. 3.>

1.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폐업 등으로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표본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제4급감염병으로 하고,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6., 2018. 3. 27.>

⑦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를 확보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6.>

⑧ 제7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절차 및 정보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6.>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과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해부명령) ①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어 시체를 해부(解剖)하지 아니하고는 감염병 여부의 진단과 사망의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부를 하려면 미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를 말한다. 이하 "연고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전문의, 해부학, 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로 지정하여 해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해부는 사망자가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생물학적 안전 등급을 갖춘 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⑤ 제3항에 따른 해부를 담당하는 의사의 지정,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 해당 시체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①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9. 12. 3.>

②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0. 3. 4.>

⑥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작성·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제목개정 2018. 3. 27., 2019. 12. 3.]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2018. 3. 27.>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

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록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지열차 등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2018. 3. 27.>

4.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를 하는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 접수 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7. 선박항공지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

· 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② 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3. 4.>

③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3. 4.>

④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3. 4.>

제60조(방역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방역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소속 방역관은 같은 항 제8호의 업무도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을 가진다.

④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 등 관계 공무원 및 그 지역 내의 법인단체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관의 자격직무조치권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 의료기관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이동경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⑤ 의료인,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같은 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

3. 제2호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⑨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범위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5] [보건복지부령 제734호, 2020. 6. 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5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 6. 4.>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시행일 : 2020. 9. 5.] 제28조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통지) 법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해

야 한다.

[전문개정 2020. 6. 4.]

[시행일 : 2020. 9. 5.] 제32조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2016. 6. 30.>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료법

[시행 2020. 6. 5.]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④ 삭제 <2009. 1. 30.>

⑤ 삭제 <2009. 1. 30.>

⑥ 삭제 <2009. 1. 30.>

⑦ 삭제 <2009. 1. 30.>

⑧ 삭제 <2009. 1. 30.>

[시행일 : 2021. 3. 5.] 제3조제2항제3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경찰법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566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2.>

[전문개정 2011. 5. 30.]